

### NPL채권 투자 수익의 매출인식 여부

**Q** 당사는 '기타금융업' 으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입니다.NPL 채권에 투자하여 최근 해당 투자로 부터 수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NPL채권은 대부업체가 관리를 대신 하였으며, 당사는 투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의 초과 수익을 당사에서 관리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당사 매출로 인식 하였습니다.  
 해당 회계 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문의 합니다.

**A**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익(매출)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

### 도급(시급제) 부가세 관련

**Q** 도급 업체에서 시급제로 추가 파트타이머를 고용했습니다.  
 시급은 30,000원 + 4대보험과 같은 간접비로  
 대략 1시간 근무시 30,980원  
 $30,980원 + 부가세 10\% = 34.078$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0% 부가세는 왜 붙는건가요?  
 일반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시급제로 진행시에도 10%부가세가 붙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시급제로 사람을 썼을 때는 10%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직접 근무인원에게 시급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하게 되면 10%가 붙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므로, 도급업체에서 귀사에게 도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년수문의 및 토지임대료산정방법

**Q** (질문1) 주유소 지하탱크용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알고싶습니다  
취득가액 2억~3억 가량이고 건축물로 해야하는 건지 아님 저장탱크로 내용년수 4년으로 하는건지?

(질문2) 토지의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유소임대에 줄때 임대료 산정방법?

**A** 1.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이외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반영하시면 되므로  
귀사도 건축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토지의 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부외자산 회계처리

**Q** 안녕하세요. 당사의 거래중 파지 처리를 외주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에 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가상각기간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파지처리 장비 소유가 당사로 이전되면서 부외 자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외 자산에 대한 세무적처리와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A** 중고자산이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는 경우 다른 일반 자산 취득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